

Part6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의 관할에 관하여

오정후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의 관할에 관하여

오 정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1. 민사소송법학의 전속관할

민사소송법학의 전속관할이란 입법자가 공익 등의 이유로 어떤 사건을 특정 법원에서만 관할하도록 정한 것이다. 전속관할의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학의 관할 중 직무관할은 성질상 전속관할이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명문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만 전속적이다. 예컨대, 가사소송법 제2조는 전속적 사물관할, 제22조, 제26조, 제30조는 전속적 토지관할을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1조는 전속적 토지관할을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상법 제186조, 제287조의17 등도 전속적 토지관할,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은 토지와 사물관할 모두 전속관할로 정한다. 제453조 제1항은 토지, 사물관할만이 아니라 심지어 심급까지도 대상으로 한다.¹⁾

2.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관할

(1)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른 해석

이 조문은 위의 기준에 따를 때 전속관할이 아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을 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한 업무인 ‘소에 대한 판결’ 업무이므로 직무관할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규정인데 명문으로 ‘전속적’이라고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속관할이라고 새길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 조문이 전속관할 규정이 아니라면 언론중재법에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 않을까?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은 이 조문 없이도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언론중재법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을 따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이를 전속관할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법

1) 이 점에서 변경의 소와 재심의 소의 관할은 토지나 사물관할이 아니고 기판력 있는 판결의 변경 또는 재심이라는 ‘직무’와 관련된 직무관할이라고 새기기도 한다.

원의 입장이다.

(2)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 제도의 연혁에 따른 해석

위의 의문을 풀기 위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의 연혁을 살핀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가결한 언론기본법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신설하였다. 동법 제48조 제1항에서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제51조 제3항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가처분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1987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정정보도청구(1995년 개정 이후에는 반론보도청구라 하였다), 제20조의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거쳐 지금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 제도로 이어졌다.

1980년 언론기본법은 제51조 제3항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면서, 그 앞의 제2항에서 관할법원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로 정하였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1980년 언론기본법 제51조 제2항과 거의 같다. 차이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제1심재판’이라는 표현이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이라고 바뀐 것뿐이다.²⁾ 그런데 관할법원을 정하는 언론기본법 제51조 제2항이 가처분 절차에 따른다고 하는 제3항보다 앞에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가처분 절차에 따르면 관할법원은 당시의 민사소송법 제7편 강제집행 제717조 제1항에 따라 ‘본안의 관할법원’이고, 이는 동법 제524조에 따라 전속관할이다. 언론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가처분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기 전에 제2항에서 관할법원을 먼저 정하였으니, 이는 가처분 절차의 관할법원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당시의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의 가처분 법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다면 토지관할이 전속적이었을 터인데, 이 조문이 준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니 오히려 이는 전속적이지 않다고 새길 수 있을 것이다.³⁾

그 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정정보도청구의 소(1995년 개정 후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추후보도청구의 소에도 관할법원 규정이 먼저

2) 언론기본법은 제51조 제1항에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한다고 표현하고 제3항에서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사건이 일반 판결절차와 다르다고 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글쓴이는 이전에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이 전속관할을 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과 제6항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니, 앞선 제5항에서 관할법원을 따로 정한 것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와 관할을 달리 정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속관할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규정되고 그 다음 항에서 가처분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앞의 두 법률과 달리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서는 앞의 두 법률과 같이 새길 수 있을 것이고,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문제이다.

그런데 현행 언론중재법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은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를 반론보도청구의 소, 추후보도청구의 소와 구별하지 않고 묶어서 다룬다. 언론중재법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나누어 규정한 것은 제26조 제6항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언론중재법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다른 소 2가지와 구별하지 않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절차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둔 문제가 있다.⁴⁾ 이렇게 보면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관할법원을 정한 것은 예전에 언론피해 관련 소가 모두 가처분 절차에 따르던 시절의 규정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일 뿐,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관할 조문을 언론중재법에 따로 두려고 한 것(심지어 전속관할을 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3.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 사건의 성격과 전속관할 - 입법론?

위 1.에 전속관할은 입법자가 ‘공익’ 등을 이유로 정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렇다면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에 공익을 고려하여 전속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는가? 현행법 조문은 전속관할로 새길 수 없지만, 입법론으로 이런 소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핀다.

민사소송에서는 ‘공익’이라는 요소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사인간의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니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도 국가기관의 절차이고 민사소송법이 국가권력인 사법권 행사를 규율하는 법이니 만큼 공익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몇 있다. 전속관할은 그 드문 경우 중

4)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의 집행정지도 민사집행법 제309조의 집행정지에 따른다고 정한다.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과 맞지 않는 것이다. 하위법령의 상위법령 위반이다. 그리고 동 규칙 제3조와 제4조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심판에서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판결에 집행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심판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므로 변론은 당연히 열어야 하고 집행기간의 제한도 없으니 이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하나이다.

직무관할이 성격상 전속관할인 것은, 사법부의 다종다양한 직무를 사법부의 어떤 기관, 어떤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사법부의 직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만 들면, 재판 업무는 법관이 수행하고, 집행 업무를 집행관과 사법보좌관이 대부분 수행하도록 하고, 등기업무를 등기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부의 직무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 법률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공익의 문제이다.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이런 문제가 아니다. 제1심에서 지역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 법원이 특정 사건을 관할하는가, 합의부와 단독판사 중 어떤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관할하는가의 문제는 국민이 법원에 편리하게 접근할 가능성, 사건의 경중에 따른 구분, 법원의 업무부담 등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특별히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법의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법원을 둘 필요가 있고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만이 아니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전속관할로 정한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소의 전속관할은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민사소송법은 특허권 등의 사건에 대하여 전문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한다.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의 사건에 공익이 관련되는가? 그것도 피고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서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을까? 정정보도청구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인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매우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곳의 법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니며,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재판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여러 법원 가운데에서 피고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서만 사건을 관할하여야 할 공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민사소송법학의 관점에서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관할을 전속관할로 세길 수 없고, 입법론적으로도 이것을 전속관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